

## 기준일 설정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
당사는 상법 제360조의10의 규정에 따른 소규모 주식교환의 반대의사 접수를 위한 권리주주 및 소규모 주식교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주식교환계약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,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19년 8월 22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주식교환의 반대의사 접수를 위한 권리주주 및 소규모 주식교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주식교환계약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로 정하며, 2019년 8월 23일부터 2019년 8월 30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
2019년 8월 7일

가온전선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재인

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45번길 120(금정동)

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대표이사 허 인